

경기역사교육실천연구회 회칙

제정 2019.3.1.
1차 개정 2021.3.27.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경기역사교육실천연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약칭은 ‘역사교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역사 교육 관련자의 모임으로, 회원들의 연구와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교육과 역사교육 발전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본회는 학교교육과 역사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회원 간의 교육 실천 공유
- 회원 간의 상호 친목 도모
- 교과 공동의 교육 연구 자료 개발
- 회원들의 교육전문성 함양과 수호를 위해 필요한 일
- 교육제도 및 교육 정책의 개선에 관한 일
- 그 밖에 본회에서 의결한 사업
- 기타 이 모임의 목적을 실천하는 바에 해당하는 일

제2장 회원 및 재정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 자격: 회원은 초·중등 역사 교사 및 관련 교사, 역사교육 관련 연구자 및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으로 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제 4조 3항의 의무와 권리 이행을 약속한 사람으로 한다.
- 종류
 - 일반회원: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연 100,000원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
 - 준회원: 기존 회원 중 연 30,000원의 회비를 지불한 회원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회원
- 의무와 권리
 - 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외부 공유 및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권리: 일반회원은 본회에서 관리하는 SNS와 홈페이지에 공유되는 자료 및 연수를 위해 발간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각종 강의 및 출판 등의 외부 사업 및 공모연수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본회의 운영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준회원은 본회에서 관리하는 SNS와 홈페이지에 공유되는 자료 및 연수를 위해 발간된 자료 제공받는다.
- 회원 자격의 상실
 - 탈퇴: 회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칙을 지키지 않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회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2. 수입
 - ① 본회의 수입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각종 사업 예산 및 수익금, 기타 연수회비 및 기부금으로 한다.
 - ② 본회의 익년도 회비 액수는 당해 연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운영
 - ① 수입과 지출은 연구회 운영비 계정, 연수 운영비 계정, 경상비 계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 ② 본회의 회비를 포함한 모든 재정은 운영부에서 총괄한다.
 - ③ 당해 연도의 역사교실 재정의 잔액은 후년도 역사교실 구성을 위해 이월된다.
 - ④ 본회는 조직의 활성화와 회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4. 회계의 공개: 본회의 1년간의 회계 운영 사항은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제6조(총회)

1. 목적: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 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
 - ② 익년도 회장단 선출
 - ③ 본회 운영에 필요한 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2. 운영: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① 정기총회는 연1회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중에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일반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3. 개최: 총회는 출석한 일반회원과 위임장을 제출한 일반회원의 합이 전체 일반회원의 과반수일 때 개최 가능하며, 출석위원 및 위임장을 제출한 일반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그 밖의 본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목적: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모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예산 결산서의 준비에 관한 사항
 - ④ 회칙의 작성 및 심의 준비에 관한 사항
 - ⑤ 신입회원의 가입 승인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 ⑥ 총회에 올릴 안건의 작성
 - ⑦ 익년도 회장단 선출에 관한 준비 사무
 - ⑧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집행
 - ⑨ 회장이 부의한 긴급 안건 협의
 - ⑩ 기타 본회 운영에 관련되었으나 본 규정에 없는 모든 사항
3. 운영: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4. 운영위원회는 총회에 당해 기간의 사업 집행과 예·결산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의 임원을 둔다.
 - ① 회장 1명
 - ② 부회장 1명
 - ③ 간사 1명
 - ④ 운영위원 00명 이상
2. 회장단은 본회의 사업 진행에 필요할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 명의 실무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9조(회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단을 구성한다.
2. 구성
 - ① 회장은 부회장 후보와 동반 입후보하며, 전년도 총회에서 선출 및 구성된다. 단 총회 개최가 어려울 시, 전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일반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다.
 - ③ 임기: 당해 연도 2월부터 익년도 1월 말일까지의 1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부회장)

1. 부회장은 회장단을 구성하고 회장의 회무와 회계 감사를 보조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회장, 부회장 모두 유고 시, 운영위원회에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2. 구성
 - ① 부회장은 회장 후보와 동반 입후보하며, 전년도 총회에서 선출 및 구성된다. 단 총회 개최가 어려울 시, 전년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일반회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성한다.
 - ② 임기: 당해 연도 2월부터 익년도 1월 말일까지의 1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1. 간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며, 회장과 부회장을 보조하여 사무 처리를 총괄하고, 운영부장을 겸직하여 회계를 감사한다.
2. 구성
 - ① 간사는 회장단이 추천하고, 일반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한다.
 - ② 임기: 당해 연도 2월부터 익년도 1월 말일까지의 1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

1.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며, 회무를 심의 · 의결하고, 총회를 소집하며, 대표 유고 시 임기 동안의 임시 대표 1명을 선임하며,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련된 실무를 담당한다.
2. 구성
 - ① 회장단이 추천하고, 일반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한다.
 - ② 임기: 당해 연도 2월부터 익년도 1월 말일까지의 1년으로 하며, 중임 및 연임할 수 있다.
3. 그 외 필요에 따라 인원과 역할을 정한다.

제13조(소모임) 본회의 일반회원은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소모임은 일반회원이 모여 일정 양식을 갖춰 모임계획서를 작성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인 관례에 따르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운영세칙) 이 회칙은 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부칙(2021.03.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세칙) 제2조(목적), 제3조(기능), 제4조(회원), 제5조(재정), 제6조(총회), 제7조(운영위원회), 제8조(임원), 제9조(회장), 제10조(부회장), 제11조(운영위원), 제12조(간사), 제13조(소모임)를 신설 및 전면 개정함.